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814호, 2022. 2. 3. 공포, 2022. 2. 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신설·변경 조항에 맞춰 시행규칙 기존 조항을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시행규칙 일부조항을 개정

- 1) 제9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9, 제12조제1항, 제13조의2, 제22조제1항제1호, 제62조의2제6항, 제62조의3제3호, 제62조의4제1항 및 별지 제9호, 제9호의2, 제10호의4,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의 서식의 법률 조항을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승계한 자는 승계한”을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9 중 “법 제10조의4”를 “법 제10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를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4항제3호”를 “법 제11조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62조의2제6항 중 “법 제39조의2제4항”을 “법 제39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62조의3제3호 중 “법 제39조의2제3항”을 “법 제39조의2제4항”으로 한

다.

제6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2제3항”을 “법 제39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제7조제3항(제10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제7조제1항부터 3항(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를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4제2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제3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제3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제11조제4항·제15조제4항·제39조의2제3항”을 “제11조제5항·제15조제4항·제39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u>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1. 2. (생략) ② (생략)	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u>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 -----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 ----- ----- ----- -----.</u>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u>법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개시, 휴업(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시가스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2. (생략)	제10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u>법 제8조제1항----- ----- ----- ----- ----- ----- ----- -----.</u> 1. 2. (현행과 같음)

제10조의9(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4에 따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개시(휴업·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제10조의9(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4제1항-

-----.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

-----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1조제5항제3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2. (생략)

⑥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⑦ (생략)

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신고) 법 제11조의2에 따라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22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공사공정표를

-----.

1. 2.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1조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

-----.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① -----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시공 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시공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 신고를 한 경우

2. (생략)

② ~ ⑤ (생략)

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① ~ ⑤ (생략)

⑥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내 공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

-----.

-----.

1. ----- 법 제11조제4항-----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9조의2제5항-----

다.	--.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62조의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62조의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	-----
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	-----
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	-----
하여야 한다.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사계획이 <u>법 제39조의2제3</u>	3. ----- <u>법 제39조의2제4</u>
<u>항</u> 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에	<u>항</u> -----
적합할 것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제62조의4(기술검토) ① <u>법 제39</u>	제62조의4(기술검토) ① <u>법 제39</u>
<u>조의2제3항</u> 에 따라 한국가스안	<u>조의2제4항</u> -----
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	-----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
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	-----
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도시가스사업자 ([]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	------	---------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원인 [] 상속 [] 양수 [] 합병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	
	지위승계 연월일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인 제출서류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개시
도시가스사업 [] 휴업 신고서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개시일 · 휴업기간 · 폐업일

사 유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사업 []개시
[]휴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천연가스수출입업 [] 개시
[] 천연가스반출입업 [] 휴업 신고서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
사업의 휴(폐)업	기간				
	사유				
사업의 재개시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가스수출입업 · []천연가스반출입업의 []개시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허가번호	
시설의 설치장소			
공급지역			
도시가스의 종류		일일 처리능력	
사용기간		부터	까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비상공급 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1부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1부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1부 4. 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공사계획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7일, 시장·군수·구청장: 3일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22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변경승인)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승인서 작성	→	발급
--------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기술검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아래 참조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5항·제15조제4항·제3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제21조제4항·제6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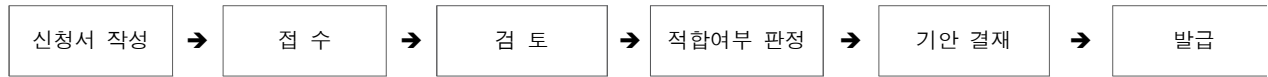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1부(시설 변경의 경우 그 변경부분만 해당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금액
	3. 도면 1부(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합니다)	
처리기간	도시가스제조사업소	15일
	공급소, 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	7일
	배관,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5일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